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1

발의연월일: 2017. 2. 6.

발 의 자: 한정애·김성수·김정우

김종훈・박 정・박찬대

박홍근 • 변재일 • 소병훈

송옥주·최도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애니메이션 작가, AS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덤프 운전기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등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	1
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	
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	
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다음 각목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
	로자로 본다.
<u><신 설></u>	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
	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
	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
	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u><신 설></u>	나. 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
	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
	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